

임시운행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(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 행허가는 20일)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(서명 또는 인)	
사용자	상호(명칭)	전화번호	
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
신청사항	차종	차명	
	차대번호	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	× (mm)
	운행목적		
	운행기간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. 시험·연구 계획서 나.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.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·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. 시험·연구 계획서	수수료 1대에 대하여 1,800원. 다만,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------	--	--

유의사항

-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(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및 제4항)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가. 신규등록신청·차대번호 표기·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: 10일 이내
나. 수출을 위한 운행: 20일 이내
다.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·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: 40일 이내
라. 제작자 등의 시험·연구 목적의 운행: 2년 이내(친환경·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·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)
마.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·연구 목적의 운행: 5년 이내
※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